

# IMDG CODE 제36차 개정판 주요 개정내용 II

## IMDG CODE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자료 제공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2. 소량 위험물(LQ)이 수납된 컨테이너의 표시 및 포장요건 등 개정

#### 1) 중간용기가 필요한 위험물 포장요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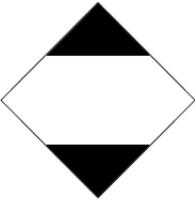

제8급 포장등급 II의 액체 물질이 충전된 유리, 도기 또는 자기 내장용기는 경질인 중간용기에 수납하도록 개정되었다(제3.4.2.3항).

#### 2) 소량 위험물의 적재규정 개정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은 적재구분 A(stowagecategoryA)로 배정하며, 위험물 목록 (16)열에 명시된 그 밖의 적재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도록 개정되었다(제3.4.3항).

#### 3) 항공용 소량 위험물 표시의 부착 허용

해상 운송용 소량 위험물 포장화물에 항공용 소량 위험물 표시를 부착한 것은 해상 운송용 소량

	
해상용 소량 위험물 표시	항공용 소량 위험물 표시

위험물에 관한 포장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다(제3.4.5.3항).

4) 컨테이너 외부의 소량 위험물 표시 부착 요건의 명확화

위험물 포장화물과 소량 위험물 포장화물이 함께 수납된 컨테이너에 대한 대형표찰 부착요건이 다음과 같이 명확화되었다(제3.4.5.5.2항, 제3.4.5.5.3항):

- ① 대형표찰(placard)부착이 요구되는 위험물과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LQ)이 함께 수납된 컨테이너에는 대형표찰(placard)부착이 요구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대형표찰과 표시를 4측면에 부착할 것
- ② 대형표찰의 부착이 면제된 자동차(유엔번호 3166 및 유엔번호 3171) 및 수소화 니켈-금속 배터리(유엔번호 3496) 등과 같은 위험물과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LQ)이 함께 수납된 컨테이너에는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소량 위험물 대형표찰을 4측면에 부착할 것
- ③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인 경우, 컨테이너의 4측면에는 해양오염물질 표시를 부착할 것

### 3. 극소량 위험물(EQ)의 비-위험물 조건 신설

E1, E2, E4 및 E5기호가 배정된 극소량 위험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위험물로 취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3.5.1.4항).

- 1) 내장용기당 물질의 최대 순질량이 액체인 경우에는 1mL로, 고체인 경우에는 1g으로 한정될 것
- 2) 제3.5.2항의 규정(극소량 포장용기 규정)을 충족할 것
- 3) 제3.5.3항의 규정(극소량 포장화물의 시험 규정)에 따를 것
- 4) 외장용기당 위험물의 최대 순질량(maximum net quantity)이 고체인 경우에는 100g을 액체 및 가스인 경우에는 100mL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신규 위험물 추가

다음의 10가지 위험물이 추가되었다.

상기 각 품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KRILL MEAL(크릴분말)

새우와 같은 해양생물인 크릴에서 생성된 분홍색에서 적색의 분말. 자연발열하기 쉬움

2) IODINE MONOCHLORIDE, LIQUID(일염화 아이오딘, 액체)

유엔번호 1792의 고체에 추가하여 액체에 대하여 유엔번호 3498로 추가됨

3) CAPACITOR(축전기)

# Hot Issue

유엔번호	정식운송품명(PSN)	등급(부위험성)	포장등급
3497	KRILL MEAL	4.2	II/III
3498	IODINE MONOCHLORIDE, LIQUID	8	II
3499	CAPACITOR, electric double layer(with an energy storage capacity greater than 0.3 Wh)	9	-
3500	CHEMICAL UNDER PRESSURE, N. O. S.	2.2	-
3501	CHEMICAL UNDER PRESSURE, FLAMMABLE, N. O. S.	2.1	-
3502	CHEMICAL UNDER PRESSURE, TOXIC, N. O. S.	2.2(6.1)	-
3503	CHEMICAL UNDER PRESSURE, CORROSIVE, N. O. S.	2.2(8)	-
3504	CHEMICAL UNDER PRESSURE, FLAMMABLE, TOXIC, N. O. S.	2.1(6.1)	-
3505	CHEMICAL UNDER PRESSURE, FLAMMABLE, CORROSIVE, N. O. S.	2.1(8)	-
3506	MERCURY CONTAINED IN MANUFACTURED ARTICLES	8(6.1)	III

활성탄(비-위험물)과 전해액이 포함된 에너지 저장용 장치. 장치에 장착된 전기 이중층 축전기는 충전된 상태로 운송할 수 있음. 에너지 저장용량이 0.3Wh이하인 것은 비-위험물임

#### 4) CHEMICAL UNDER PRESSURE(가압하의 화학품)

가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스로 가압된 액체, 반죽 또는 분말. 다만, 에어로졸(유엔번호 1950)은 이 품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 5) MERCURY CONTAINED IN MANUFACTURED ARTICLES(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수은)

수은이 내장된 제품. 수은 자체는 유엔번호 2809로 분류됨

## 5. 기타 일부 변경된 규정

### 1) 유기 과산화물의 신규 화학명칭 추가

다음 물질이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위험물 목록에 추가되었다.

유엔번호	신규 화학명칭
3106	((3R-(3R, 5aS, 6S, 8aS, 9R, 10R, 12S, 12aR**)) -DECAHYDRO-10-METHOXY-3,6,9-TRIMETHYL-3,12-EPOXY-12H-PYRANO(4,3-j)-1,2-BENZODIOXEPIN)
3110	3,6,9-TRIETHYL-3,6,9-TRIMETHYL-1,4,7-TRIPEROXONANE

### 2) 삭제된 품명

① 유엔번호 3492, TOXIC BY INHALATION LIQUID, CORROSIVE, FLAMMABLE, N. O. S. with an inhalation toxicity lower than or equal to 200mL/m<sup>3</sup> and saturated vapour concentration greater than or equal to 500 LC<sub>50</sub>

② 유엔번호 3493, TOXIC BY INHALATION LIQUID, CORROSIVE, FLAMMABLE, N. O. S. with an inhalation toxicity lower than or equal to 1,000mL/m<sup>3</sup> and saturated vapour concentration greater than or equal to 10LC<sub>50</sub>

3) 부 위험성 등급이 추가된 품명

유엔번호	품명(PSN)	35차		36차	
		주 위험성	부 위험성	주 위험성	부 위험성
2381	DIMETHYL DISULPHIDE	3	-	3	6.1
2809	MERCURY	8	-	8	6.1

4) 정식운송품명(PSN)의 표기 변경

정식운송품명의 표기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고, 유엔번호 3276, 3278, 3282, 3439, 3464 및 3467에 대한 정식운송품명(PSN)의 형용사 사용에 대하여도 변경되었다.

유엔번호	35차	36차
1090	ACETONE(ACETONESOLUTIONS)	ACETONE
1106	AMYLAMINESAMYL	AMINE
1107	AMYL CHLORIDES	AMYL CHLORIDE
1111	AMYL MERCAPTANS	AMYL MERCAPTAN
1112	AMYL NITRATES	AMYL NITRATE
1147	DECAHYDRONAPHTHALENES	DECAHYDRONAPHTHALENE
1792	IODINE MONOCHLORIDE	IODINE MONOCHLORIDE, SOLID
1939	PHOSPHORUS OXYBROMIDE, SOLID	PHOSPHORUS OXYBROMIDE
2049	DIETHYLBENZENES	DIETHYLBENZENE
2266	N,N-DIMETHYLPROPYLAMINE	DIMETHYL-N-PROPYLAMINE
2297	METHYLCYCLOHEXANONES	METHYLCYCLOHEXANONE
2347	BUTYLMERCAPTANS	BUTYL MERCAPTAN
2372	1,2-DI(DIMETHYLAMINO)-ETHANE	1, 2-DI(DIMETHYLAMINO) ETHANE
2431	ortho-ANISIDINE	ANISIDINES
2615	ETHYL PRORYL ETHERS	ETHYL PRORYL ETHER
2678	RUBIDIUM HYDROXIDE, SOLID	RUBIDIUM HYDROXIDE
2873	N,N-DI-n-DIBUTYLAMINOETHANOL	DIBUTYLAMINOETHANOL
2878	TITANIUM, SPON GEGRANULES or TITANIUM, SPON GEPOWDERS	TITANIUM SPONGE GRANULES or TITANIUM SPONGE POWDERS
3054	CYCLOHEXANETHIO(CYCLOHEXYLMERCAPTAN)	CYCLOHEXYL MERCAPTAN
3245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3276	NITRILES, TOXIC, LIQUID, N. O. S.	NITRILES, LIQUID, TOXIC, N. O. S.
3278	ORGANOPHOSPHORUS COMPOUND, LIQUID, TOXIC, N. O. S.	ORGANOPHOSPHORUS COMPOUND, LIQUID, TOXIC, N. O. S.
3282	ORGANOMETALLIC COMPOUND, TOXIC, LIQUID, N. O. S.	ORGANOMETALLIC COMPOUND, LIQUID, TOXIC, N. O. S.

# Hot Issue

유엔번호	35차	36차
3439	NITRILES, TOXIC, SOLID, N. O. S.	NITRILES, SOLID, TOXIC, N. O. S.
3464	ORGANOPHOSPHORUS COMPOUND, TOXIC, SOLID, N. O. S.	ORGANOPHOSPHORUS COMPOUND, SOLID, TOXIC, N. O. S.
3467	ORGANOMETALLIC COMPOUND, TOXIC, SOLID, N. O. S.	ORGANOMETALLIC COMPOUND, SOLID, TOXIC, N. O. S.

## IV. 제4장(포장 및 탱크규정) 개정내용

### 1. 회수압력용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되고 있거나, IMDG Code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압력용기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제4.1.1.19항).

### 2. 포장지침의 일부 변경

1) P001, P002, P010, P011, P111~P116, P130, P131, P134~P144, P403, P410, P502, P503, P800 등의 결함 용기의 외장용기로 1A1, 1B1, 1N1, 4N, 3A1, 3B1, 3H1 등의 사용이 허용되도록 개정되었다.

2) 유엔번호 1950(에어로졸)의 포장지침이 “P003”에서 “P207”로 변경되었다.이 포장지침에는 포장등급 II의 성능수준에 적합한 경질 외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경질 외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대 순질량이 55kg이하(파이버보드 경질 외장용기)또는 125kg 이하(파이버보드 이외의 경질 외장용기)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용기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3. 포장지침의 신설

#### 1) 가압하의 화학품의 포장지침 신설

P206	포장지침	P206
본 포장지침은 유엔번호 3500, 3501, 3502, 3503, 3504 및 3505에 적용한다.		
IMDGCode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2장의 해당 요건과 일치하는 실린더 및 압력드럼을 허가 한다.		
(1)제4.1.6.1항의 일반포장규정을 충족할 것		
(2)정기검사의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할 것		
(3)실린더 및 압력드럼에는 50℃에서의 비-가스상(non-gaseous phase)이 그 수용량의 95%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60℃에서 완전히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충전 후, 65℃에서의 압력이 실린더 및 압력드럼의 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실린더 및 압력드럼 내부의 모든 물질의 증기압과 체적 팽창을 고려할 것		
(4)최소시험압력은 가압 가스(propellant)에 대한 P200에 따라야 하지만 20bar이상일 것		

P206	포장지침	P206
추가규정 : 실린더 및 압력드럼은 호스(hose) 및 가는 막대기 모양의 부품(wanda ssembly)과 같은 분사장치(spray application equipment)가 연결된 상태로 운송 위탁하지 말 것		
특별포장규정 : PP89 유엔번호 3501, 3502, 3503, 3504 및 3505의 경우, 제4.1.6.1.9.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용된 재충전할 수 없는 실린더는 1,000리터를 시험압력(bar)수치로 나눈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용량(리터)을 허용함. 다만, 용량 및 압력에 관한 구조기준 ISO11118:1999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대 용량은 50리터임		

2) 에어로졸의 포장지침 신설

P206	포장지침	P206
본 포장지침은 유엔번호 1950에 적용한다.		
제4.1.1항 및 제4.1.3항의 일반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소형용기를 허가한다 : (1)드럼 (1A1, 1A2, 1B1, 1B2, 1N1, 1N2, 1H1, 1H2, 1D, 1G): 상자 (4A, 4B, 4N, 4C1, 4C2, 4D, 4F, 4G, 4H1, 4H1). 포장용기는 포장등급 II의 성능수준에 적합할 것 (2)경질 외장용기의 최대 순질량은 다음과 같을 것 : 파이버보드 : 55kg 파이버보드 이외 : 125kg 제4.1.1.3항의 규정에 적합할 필요가 없음 소형용기는 정상운송조건 중 에어로졸의 이동과 우발적 방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고 또한 제조된 것일 것		
특별포장규정 : PP87 유엔번호 1950의 폐기 에어로졸을 포장지침 327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소형용기에는 운송 중 누출 우려가 있는 자유 액체(free liquid)를 보관할 수 있는 수단(예를 들면, 흡수제)이 마련될 것 소형용기는 인화성 대기의 형성과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통풍되도록 할 것		

V. 제5장(위탁절차) 개정내용

1. 포장화물에 표시하는 유엔번호의 최소높이 규정 신설

포장화물 외부에 표시하는 유엔번호의 크기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포장화물에 표시하는 유엔번호의 크기는 “UN”문자를 포함하여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용기의 용량/질량	유엔번호의 크기	
30리터, 30kg초과	12mm	
30리터, 30kg이하	6mm	
5리터, 5kg이하	적절한 크기	

## Hot Issue

다만 용량이 30리터 이하 또는 30kg이하인 포장용기와 수용량이 60리터 이하인 실린더에는 6mm이상의 높이어야 하며, 용량이 5리터 이하이거나 5kg이하인 포장용기에는 적절한 크이어야 한다(제5.2.1.1항).

### 2. 위험물 운송서류의 표시방법 변경

#### 1) 해양오염물질 표시방법 변경

운송 화물이 해양오염물질인 경우, 위험물 운송서류의 위험물 명세에 추가하는 “MARINE POLLUTANT”라는 용어에 “ENVIRONMENTALLY HAZARDOUS”라는 용어로 보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제5.4.1.4.3.5항)

예 : UN 1092, Acrolein, stabilized, class 6.1 (3), PGI, (-24℃ c.c.), MARINE POLLUTANT/ ENVIRONMENTALLY HAZARDOUS

#### 2) 회수압력용기 표시 신설

위험물을 회수압력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SALVAGE PRESSURE RECEIPT ACLE”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신설되었다(제5.4.1.5.3항).

#### 3) 연화(firework)에 대한 분류승인번호 표시 신설

연화(유엔번호 0333, 0334, 0335, 0336, 0337)를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서류에 분류승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신규 도입하였다(제5.4.1.5.15항).

분류승인번호(classification reference)는 주무관청 국가기호(국제자동차식별기호로 표시), 주무관청 식별기호 및 고유 일련번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류승인번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GB/HSE123456
- D/BAM1234
- USA EX2009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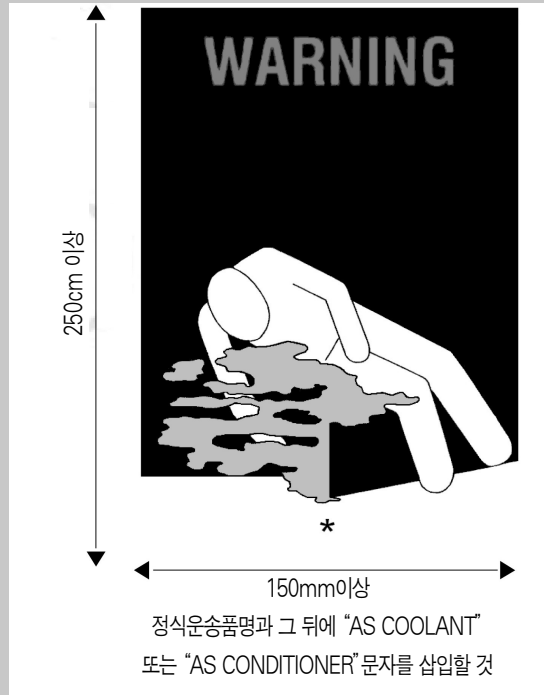
### 3. 냉각/조절 목적으로 드라이아이스(유엔번호 1845) 등이 투입된 포장화물 및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 신설

냉각 또는 조절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질식 위험성이 있는 물질(예, 드라이아이스(유엔번호 1845), 냉동액화 질소(유엔번호 1977) 또는 냉동액화 아르곤(유엔번호 1951))이 투입된 포장화물 및 화물운송기구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이 신설되었다(제5.5.3항).

이 특별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냉각제 또는 조절제가 투입된 포장화물은 포장지침 P203, P620, P650, P800, P901 또는 P904에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는 화물운송기구에 수납하여 운송할 것

- 2)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 물이 투입된 포장화물에는 투입된 위험 물의 정식운송품명과 그 바로 뒤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표시할 것(예 : CARBON DIOXIDE, SOLID, ASCOOLANT)
- 3)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투입된 화물운송기구에는 하기와 같은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 4) 냉각이나 조절된 후 운송 전에 완전히 환기되지 아니한 화물운송기구와 관련한 서류에는 “UN” 문자 다음에 유엔번호 및 정식운송품명과 그 바로 뒤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할 것



## VI. 제6장(포장용기의 구조 및 시험 규정) 개정내용

### 1. 회수압력용기의 설계, 구조 및 시험 규정 신설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되고 있거나, IMDG Code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압력용기(들)를 운송하기 위한 회수압력용기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회수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구조 및 시험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2.3.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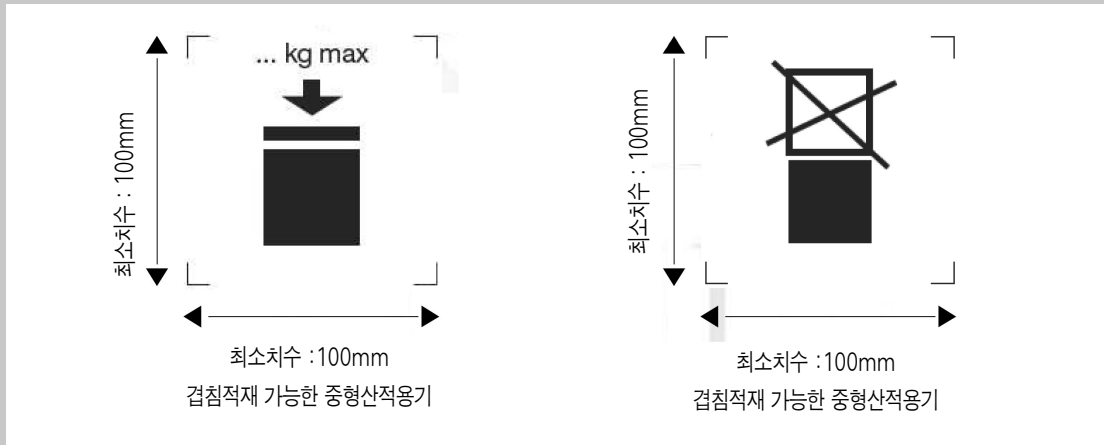
-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신조 회수압력용기에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조 회수압력 용기에 적용함
- 2) 압력용기의 취급 및 폐기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수압력용기의 설계에는 실린더나 압력드럼에 사용되는 것 이외의 장치(평평한 머리, 급속개방장치 및 원통부 개구부와 같은 것)을 포함할 것
- 3)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에는 회수압력용기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지침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 4) 증명서의 사본은 회수압력용기 제조자가 회수압력용기의 소유자에게 보낼 것



# Hot Issue

## 2. 중형산적용기(IBC)의 겹침적재하중 심벌에 치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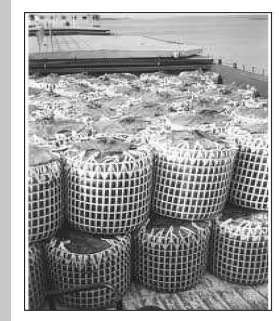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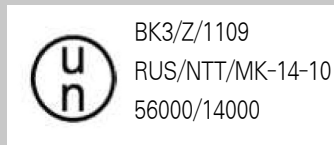
중형산적용기에 표시하는 겹침적재하중 심벌의 최소치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제6.5.2.2.2항).



## 3. 유연성 산적용기 BK3의 설계, 구조 및 승인 규정 신설

산적용기에 유연성 산적용기(FBC : Flexible Bulk Container)BK3가 포함됨에 따라 유연성 산적용기에 대한 설계, 구조 및 시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9.5항).

위험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부 들어 올리기 시험, 넘어뜨리기 시험, 직립시험, 파열전파시험 및 겹침적재시험이 필요하며, 유엔승인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VII. 제7장(운송작업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 1. 제7장의 재편집

제7장은 재편집되었다. 제7.1장 및 제7.2장에는 일반 적재규정 및 격리규정이 수록되었고, 제

7.3장에는 위험물을 화물운송기구(CTU)에 어떻게 수납하여 운송하여야 하는지가 재편집되어 수록되었다.

항목	35차	36차
제7.1장	적재	일반 적재규정
제7.2장	격리	일반 격리규정
제7.3장	사고 발생 시의 특별규정 및 위험물 관련 화재예방조치	화물운송기구(CTU)의 수납 및 사용과 관련된 위탁조작 및 관련 규정
제7.4장	선박에 적재된 화물운송기구의 운송	컨테이너선에 적재 및 격리
제7.5장	화물운송기구의 수납	로-로선에 적재 및 격리
제7.6장	부선 운반선에 탑재되는 탑재형	부선일반 화물선에 적재 및 격리
제7.7장	온도제어규정	부선 운반선에 탑재되는 탑재형 부선
제7.8장	폐기물의 운송	사고 발생 시의 특별규정 및 위험물 관련 화재 예방조치
제7.9장	적용면제, 승인 및 증명서	적용면제, 승인 및 증명서

## 2. 용어의 정의 명확화

용어의 정의가 더욱 명확화되었다(제7.1.2항). 예를 들면 : 거주구역과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clear off living quarter)이란 포장화물이나 화물운송기구를 거주구역, 공기 흡입구(air intake), 기관 구역 및 그 밖의 폐쇄된 작업구역으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함을 말한다.

잠재적 발화원(potential sources of ignition)이란 개방화기(open fire), 기계류의 배기구, 취사실 통풍구, 전기콘센트 및 전기장치(승인받은 안전형식이 아닌 냉동 또는 가열 화물운송기구에 있는 것 포함)를 말하지만, 이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열원을 피하여 적재할 것(protected from sources of heat)이란 포장화물과 화물운송기구를 가열된 선박 구조물(표면 온도가 55℃를 초과할 수 있는 곳)로부터 2.4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열된 구조물의 예는 스팀 배관, 가열 코일, 가열된 연료 탱크와 화물 탱크의 상부나 옆벽 그리고 기관구역의 격벽 등이다. 추가로, 화물운송기구 내부에 수납되지 아니하는 포장화물과 갑판상부에 적재되는 포장화물은 복사열이 차단되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화물운송기구의 표면은 바람이 거의 없는 조건의 직사일광인 경우 쉽게 열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은 뜨거워질 수 있다. 화물운송기구 내부의 화물 특성과 예정된 항해 예방조치에 따라, 직사일광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3. 식품류와의 격리 문구 개정

식품류와 “격리방법 1”로 격리 또는 “격리방법 2”로 격리라는 문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식품류와의 격리규정은 제7.3.4.2.2항, 제7.6.3.1.2항 및 제7.7.3.7항에 수록된 바에 따르도록 개정되었다.

# Hot Issue

## 4. 화약고 정의 삭제

화약고(magazine)용어는 삭제되고, 제1급용 밀폐형 화물운송기구의 정의가 추가되었다(제7.1.2항).

- 1) 선박에 고정되지 아니한 것 : 제1급용 밀폐형 화물운송기구 규정을 충족할 것
- 2) 선박에 고정된 것 : 제7.6.2.4항의 규정을 충족할 것(즉,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출입이 방지되도록 자물쇠로 채우거나 적절하게 잠글 것)

## 5. 제1급 적재구분 개정

IMDGCode제7장의 검토에 따라 화약류에 관한 적재방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즉, 화약류를 수납할 수 있는 화약고 중 “A형 화약고”의 정의가 삭제되었고, 화약류의 적재방법도 15개의 적재구분에서 5개의 적재구분으로 개정되었다(제7.1.3.1항).

적재구분 01	화물선(승객 12인 이하) 여객선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또는 갑판하부 적재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또는 갑판하부 적재
적재구분 02	화물선(승객 12인 이하) 여객선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또는 갑판하부 적재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또는 제7.1.4.4.5항에 따라 갑판하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적재구분 03	화물선(승객 12인 이하) 여객선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또는 갑판하부 적재 - 금지. 다만, 제7.1.4.4.5항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적재구분 04	화물선(승객 12인 이하)  여객선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또는 갑판하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 금지. 다만, 제7.1.4.4.5항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적재구분 05	화물선(승객 12인 이하) 여객선	- 갑판상부 적재(밀폐형 화물운송기구에 한함) - 금지. 다만, 제7.1.4.4.5항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 6. 제1급 화물의 적재방법 규정 명확화

제1급 화물의 적재방법이 다음과 같이 명확화되었다(제7.1.4.4항).

- 1) 제1급 화물은 잠재적 발화원으로부터 수평거리로 6미터 이내의 장소에 적재하지 말 것
- 2) 제1급 화물(등급 1.4제외)은 거주구역, 구명설비 및 대중 접근로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 3) 제1급 화물(등급 1.4제외)은 선폭의 1/8에 해당하는 길이와 2.4미터를 비교하여 더 짧은 거리보다 선박 현측에 더 가깝게 배치하지 말 것

## 7. 컨테이너의 격리에 관한 도해 삭제

적재 및 격리에 관한 요건을 쉽게 친숙화하고 관련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컨테이너선에서의 컨테이너의 격리에 관한 도해는 IMDG Code에서 모두 삭제된 대신 MSC.1/Circ. 1440에 별도로 수록되었다. ☐